■ 건축법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1999.5.11, 2005.10.20, 2006.5.12>

##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(제10조 관련)

| 연 면 적 합 계 | 금 액 | |
|---|---|---|
| 200제곱미터 미만 | 단독주택 | 2천원7백원 이상<br>4천원 이하 |
| | 기 타 | 6천7백원 이상<br>9천4백원 이하 |
|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| 단독주택 | 4천원 이상<br>6천원 이하 |
| | 기 타 | 1만4천원 이상<br>2만원 이하 |
|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| | 3만4천원 이상<br>5만4천원 이하 |
|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| | 6만8천원 이상<br>10만원 이하 |
|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| | 13만5천원 이상<br>20만원 이하 |
|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| | 27만원 이상<br>41만원 이하 |
|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| | 54만원 이상<br>81만원 이하 |
| 30만제곱미터 이상 | | 108만원 이상<br>162만원 이하 |

※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.